

# 재중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인권 보호 방안\*

이 희 훈\*\*

## I. 서론

2011년 9월 27일에 중국의 선양(瀋陽)에서 탈북자<sup>1)</sup> 20명, 웨이하이(威海)에서 10명, 옌지(延吉)에서 2011년 9월 29일에 탈북자 3명, 2011년 9월 30일에 탈북자 2명 등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이하에서 “재중 탈북자”로 줄임) 총 35명이 체포되어 2011년 10월 초에 중국의 투먼(圖們)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고,<sup>2)</sup> 2011년 10월 24일에서 25일 쯤에 중국의 산둥성 칭다오에서 탈북자 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고, 2011년 11월 초에는 중국의 허난성 정저우 부근에서 탈북자인 10대 3명이, 중국의 랴오닝성 단둥에서 탈북자 11명, 중국의 윈난성 쿤밍에서도 탈북자 4명이 각각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 직전이라고 알려졌다.<sup>3)</sup>

한편 대한민국에 들어 온 탈북자의 수는 지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8~71명에 불과했지만, 1999년에서 2001년까지 148~583명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이들의 수가

---

\* 투고일자 : 2011. 11. 6      심사일자 : 2011. 12. 6      게재확정일자 : 2011. 12. 23

\*\*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1) 대한민국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 온 사람들에 대해 남한의 정치 체제가 북한의 정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정치적 선전효과를 높이고자 이들을 ‘귀순자’라고 통칭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남한의 정치 체제가 북한의 정치 체제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을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귀순자’라고 부르는 대신에 ‘탈북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칭하였다. 이후 남한의 통일부는 2005년 1월부터 이들을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새터민’이란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2011년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줄인 뜻으로 ‘탈북자’란 용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 중에서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탈북자’로 썼다. 이러한 탈북자의 용어 사용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희훈, 중국 내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2006. 12, 210면 이하.

2) ‘중서 탈북자 35명 체포, 이달 초 북송 예정’, 연합뉴스, 2011. 10. 2.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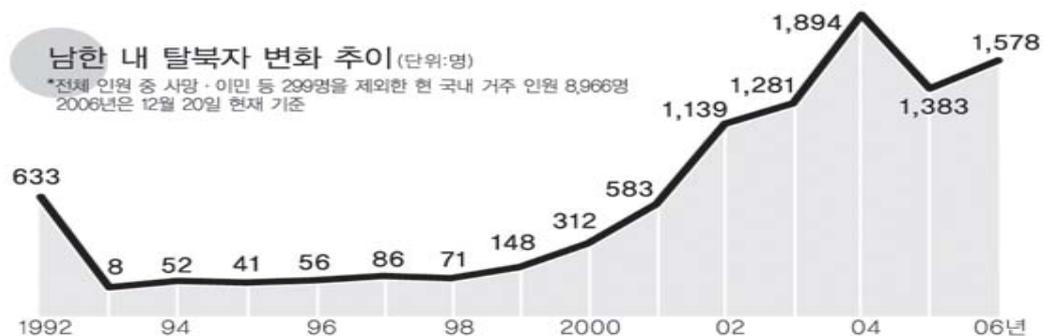
3) ‘탈북자 23명 중서 북송 위기’, 연합뉴스, 2011. 11. 10.자.

1,139명으로 1천 명이 넘어선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1,894명이었고,<sup>4)</sup> 2007년 상반기에 대한민국에 들어 온 탈북자의 총 수가 1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0년에 하반기에 이들의 총 수는 2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1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에 들어 온 탈북자의 수는 약 2만 3천명에 이르고 있다.<sup>5)6)</sup>

이러한 탈북자들은 북한과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점과 중국에 이들과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체류하다가<sup>7)</sup>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바, 2011년 11월 24일에 북한 민주화운동 본부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중국 내 탈북자 인권실태’라는 발표문에 의하면 2011년 5월~8월까지 통일부 후원으로 중국에 있는 탈북자 126명(여성 119명, 남성 5명, 미입력 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4명(51%)이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sup>8)</sup>

그리고 최근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의 등장 이후부터 탈북자를 국경에서 사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바, 중국 창바이 지역의 고위 소식통에 의하면 “2010년 12월 14일에 중국의 양강도 헤산시에서 북한 주민 7명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을 밟았으나, 이들을 추격해온 북한군의 집중 사격에 의해 5명이 즉사하고, 2명은 상처

4)



경향신문, 올 상반기 탈북자 1만명 돌파할듯,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61231205617009&p=khan>>  
(2011. 11. 25, 방문).

5) MBN 뉴스, 탈북자 2만 3천 명...취업 장벽 여전,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132454](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132454)>  
(2011. 12. 03, 방문).

6) 이러한 탈북자 수의 증가요인에 대한 것은 김수암,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통일연구원, 2006. 6, 4면 이하;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미디어, 2000. 5, 15면 이하.

7) 탈북은 거의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일부 공식 블로그, 다큐멘터리 <서울 기차>, 중국과 탈북자들,

<[http://v.daum.net/link/20265730?&CT=MY\\_ON](http://v.daum.net/link/20265730?&CT=MY_ON)>(2011. 11. 25, 방문).

8) 데일리안, 여성탈북자들 조선족 개입한 인신매매 '심각',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68221&kind=menu\\_code&keys=3](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68221&kind=menu_code&keys=3)>(2011. 11. 25, 방문).

를 입은 채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되었다.”라고 전했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1년 11월 8일에 “북한에서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북한의 국경 지역에 탈북자의 시체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라고 전했다.<sup>9)</sup>

또한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어 사살 또는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등에 의해 극심한 성적 유린을 당하거나,<sup>10)</sup> 재판 없이 감옥에 수감되어 극심한 고문을 받거나, 강제노동을 강요받거나 구타를 당하는<sup>11)</sup> 등 인권 침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바,<sup>12)</sup>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1월 19일에 “북한이 중국에서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들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거나 민족반역죄로 즉결 처형까지 하는 것은 탈북자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도적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중국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등 각종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재중 탈북자가 강제로 북송되면 받게 될 생명권의 침해 및 신체적·정신적 공포와 정치적 박해를 고려하여 이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한민국은 재중 탈북자가 강제북송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UN 등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외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인권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sup>13)</sup>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북한 주민들이 중국 등으로 탈북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이하 II). 다음으로 탈북자들이 제일 많이 체류하고 있어 탈북자의 인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고 있는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태도 및 중국의 태도로 인해 초래되는 재중 탈북자의 인권 침해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이하 III). 그리고 재중 탈북자의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줄일 수 있도록 헌법적·국제법적 측

9) 디지털 조선일보, 김정은 “강 건너면 용서 없다” ...탈북자 사살 늘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9/201111090138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9/2011110901389.html)(2011. 11. 25, 방문).

10) 특히 재중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실태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과 인권,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0. 10, 6면 이하.

11) 크리스천투데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고문·구타 심각,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9879>>(2011. 11. 25, 방문).

12)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과 북한 체포조에 의해 체포되면 중국에서 벌금형이나 구류형을 받거나 또는 북한으로 강제송환이 되는데, 대부분 중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되어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수용소에 감금되어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 불법적 체류자라는 신분적 약점 때문에 중국의 농촌 총각이나 홀아비 등에게 팔려 가거나 중국 공안이나 북한 체포조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며, 중국 내 탈북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더라도 이들의 불법적인 신분을 약점으로 하여 매우 낮은 임금을 주거나, 임금을 아예 주지 않고 강제로 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윤여상, 탈북자 인권실태와 개선 방안, 북한 제356호, 2001, 8, 39면 이하.

13) 더데일리, 인권위 "在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http://www.ith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89864#>>(2011. 11. 25, 방문).

면에서의 인권 보호 방안과 그 한계에 대해 각각 면밀히 검토한다(이하 IV). 끝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된 것을 요약·정리하여 밝힌 후, 대한민국이 재중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를 위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여러 정치적·제도적 방안들을 제시한다(이하 V).

## II. 탈북자의 발생원인

북한 주민들이 계속 탈북을 시도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유를 들 수 있다.<sup>14)</sup> 첫째, 북한 내에 유학생, 무역업자 등 외국을 경험한 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인지하였고, 북한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라디오 또는 TV 방송을 듣거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발전된 대한민국의 호기심과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내에서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패 등으로 인한 생필품과 식량부족이 매우 심각하고, 북한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암거래의 성행 등 각종 사회부조리 현상이 증가하여 북한 주민들의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내에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배금주의 가치가 확산되어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잘 살아 보기 위해서 사유재산제가 인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넷째, 탈냉전의 개혁·개방요소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북한 통제 메카니즘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탈북의 원인으로 들 수 있는바, 북한사회는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해 사회적 이동이 통제됨으로서 정치적·사회적 계층구조의 심화 및 경직화를 초래하여 이에 대해 반항심을 가진 정치적 사상범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 정치적 사상범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굴욕감과 좌절감 및 공포심을 줌으로써 탈북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III.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태도 및 인권 침해적 문제점

### 1.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태도

14) 김병로,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5, 16면 이하.

중국은 보통 재중 탈북자들을 순수한 경제적 난민<sup>15)</sup>으로 보거나,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온 불법월경자로 보아,<sup>16)</sup> 대한민국이나 제3국 또는 UNHCR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sup>17)</sup>

그리고 중국은 중국과 북한 간에 1966년에 체결한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sup>18)</sup> 및 1986년에 체결한 ‘국경지역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 제4조 제1항의 “쌍방은 주민의 불법월경방지 업무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합법적인 증명을 미소지하거나 소지한 증명이나 명시된 통행지점 및 검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월경한 경우 불법월경자로 처리한다.”라는 규정과 동 의정서 동조 제2항의 “불법월경인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그 명단 및 유관자료를 상대방에게 넘겨준다. 단 월경 후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본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그 상황을 상대방에게 통보한다.”라는 규정, 그리고 동 의정서 제5조 제1항의 “범죄자 처리 문제를 상호 협력한다. 반혁명분자와 일반 범죄자가 상대측의 경계 내로 도주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반드시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측은 상대측이 범죄자를 저지, 체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국으로 도망해 온 범인의 조사 체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체포해 관련 자료와 함께 인도한다.”라는 규정과 동 의정서 동조 제2항의 “상대측 국경의 안전, 사회질서를 위해하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상호 통보한다.”라는 규정, 그리고 1998년부터 중국과 북한에 그 효력이 적용되기 시작한 ‘길림성변경관리조례’ 및 2003년 10월에 체결한 ‘민형사 사법협조 조약’<sup>19)</sup>과 ‘1951년

15) ‘경제적 난민’이란 오로지 경제적인 목적 즉, 개인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거주국을 떠나 보다 경제적 삶이 나은 국가로 이주하는 자를 뜻한다. 이러한 경제적 난민이 합법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민’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불법적인 경우에는 보통 ‘불법입국자’ 또는 ‘불법체류자’라고 하여 체류국에 의해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경제적 난민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 Office of UNHCR, Handbook on procedure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Geneva, 1979, p. 62.

16) 김인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인권과 정의 제317호, 2003. 1, 37면 이하; 원재천, 탈북자문제: 국제소송을 통한 해결책, 인권과 정의 제317호, 2003. 1, 82면 이하.

17) 지난 2003년 1월 21일에 중국 외교부의 장 치유 대변인은 재중 탈북자들을 비밀리에 외부로 탈출하도록 지원하는 국제기구들에 의해 중국의 공공안전이 어지럽혀지고 있다면서 재중 탈북자들은 정치적 망명 희망자들이 아닌 경제 유민으로 중국 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VOA 뉴스, 중국, 탈북자 지원 기구 단속 강화 다짐, <<http://www.voanews.com/korean/news/a-35-a-2003-01-21-5-1-91132404.html>>(2011. 11. 25, 방문).

18) 이러한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의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므로, 동 협정에 대한 내용이 알려진 바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을 부득이하게 본 논문에서 생략하였다.

19) 이 길림성변경관리조례와 민형사 사법협조 조약의 내용이 소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였다.

난민협약’ 제1조 F(b)의 “난민으로서 피난지국에의 입국이 허가되기 전에 피난지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사람은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동 협약 제33조 제2항의 “난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안전에 위협으로 간주될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특별히 중대한 판결을 받아 그 국가 사회전반에 대한 위협이 되는 난민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sup>20)</sup>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재중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또한 중국은 1997년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형법 제8조에 국경관리 방해죄를 신설하여 재중 탈북자들을 돕는 중국 국민에게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1)22)</sup>

## 2.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태도로 인한 인권 침해적 문제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sup>23)</sup> 중국은 재중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경우 대량 탈북으로 인해 북한의 체제가 자칫 붕괴될 수 있고, 중앙아시아 및 티벳 지역에서의 월경 사태와 난민 시비 등과 같은 재중 탈북자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어 주어 중국 내에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 요구로 인한 중국 전체의 정치·사회적 혼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및 재중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경우 중국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sup>24)</sup> 재중 탈북자에 대해 공안(경찰)이나 특무(북한 사회안전부 요원)를 통해 재중 탈북자들을 체포한 후, 이들을 보통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해 왔다.

지난 2006년 6월 14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난민·이민위원회(USCRI: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의 그레고리 쉐(Gregory Chen) 정책 분석 국장이 발표한 ‘2006년도 국제난민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6년에 중국은 매주 약 100명의

20)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제1항에 의해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의해 난민을 강제송환 할 수 없는 원칙을 뜻한다. 이러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대해 자세한 것은 임태근,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법학 제17호, 2000. 2, 142면 이하.

21) 한겨레 21, 대탈주, 목숨 건 구조자들,

<[http://h21.hani.co.kr/hankr21/K\\_975T0159/975T0159\\_063.html](http://h21.hani.co.kr/hankr21/K_975T0159/975T0159_063.html)>(2011. 11. 25, 방문).

22) 이희훈, 앞의 논문, 213면 이하.

23) 본 논문의 III-1번 참조.

24) 노영돈, 북한탈출주민의 법적 지위와 그 처리방안,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제7집, 1996. 12, 38면; 박광득,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제3호, 2006. 2, 73면.

재중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였으며, 지난 2005년에만 재중 탈북자의 약 5000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 보고서에서 첸 국장은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재중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 때 기독교인이나 서양인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형시켜 죽임을 당하거나<sup>25)</sup> 또는 북한의 국경지역 보위부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북한 형법 제62조<sup>26)</sup>의 조국 반역죄와 동법 제233조<sup>27)</sup>의 비법 국경 출입죄의 위반 여부를 조사 받아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 형법 제62조의 조국 반역죄의 위반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대한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5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하게 되고, 이것보다 조금 죄질이 가벼운 동법 제233조의 비법 국경 출입죄의 위반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로 간주되어 3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고 15호 요덕 수용소 혁명화구역에 수감되는바, 이 과정에서 온갖 폭행과 고문 또는 강제노동이나 성폭력 등을 당하여<sup>28)</sup> 이들은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 침해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밖에 중국 공안이 체포된 재중 탈북자들을 보통 숨겨준 중국인들에게 미화 120달러를, 재중 탈북자를 고용하는 중국 내 사업주에게는 미화 3천 6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처벌을 하여 중국의 안가에 은신해 제3국으로 탈출을 준비하는 재중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이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재중 탈북자들 중 특히 여성들은 중국에서 가정부나 성매매 등에 내몰리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생존을 위해 중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들에게서 태어난 2세들은 ‘무국적자(stateless)’로 중국에서 방치되고 있는 등<sup>29)</sup> 재중 탈북자에 대한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의해 재중 탈북자들은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여러 인권들을 심각하게 침해 및 유린당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25) 자유 아시아 방송, USCRI: 중국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 지난해만 5,000명,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refugees\\_china\\_abused-2006.06.15.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refugees_china_abused-2006.06.15.html)>(2011. 11. 25, 방문).

26) 북한 형법 제62조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7) 북한 형법 제233조는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8)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 북송된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2), <[http://www.nkgulag.org/korea/s03\\_1.htm?mode=read&read\\_no=25](http://www.nkgulag.org/korea/s03_1.htm?mode=read&read_no=25)>(2011. 11. 25, 방문).

29) 자유 아시아 방송, USCRI: 중국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 지난해만 5,000명,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refugees\\_china\\_abused-20060615.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refugees_china_abused-20060615.html)>(2011. 11. 25, 방문).

## IV. 재중 탈북자에 대한 법적 인권 보호 방안과 한계

### 1. 서

중국은 재중 탈북자에 대해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 국경지역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 제4조 제1항과 제2항 및 동 의정서 제5조 제1항과 제2항, 길림성변경관리조례, 민형사 사법협조 조약, 1951년 난민협약 제1조 F(b)와 동 협약 제33조 제2항 중국 형법 제8조에 의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하기 위해 중국 공안(경찰)들은 재중 탈북자를 체포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재중 탈북자의 인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거나 줄여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및 국제법적 인권 보호 방안과 그 한계에 대해 이하에서 각각 면밀히 검토한다.

### 2. 재중 탈북자에 대한 헌법적 인권 보호 방안과 한계

#### 1) 재중 탈북자의 헌법적 지위

재중 탈북자들에 대해 헌법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영토조항에 의하여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견해<sup>30)</sup>와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견해<sup>31)</sup>에 의하면 재중 탈북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해 1948년 5월 11일의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이하에서 “임시조례”로 줄임)’는 그 법적 효력이 있었는데, 이 임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와 조선인을 모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및 조선 내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그리고 조선 내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와 외국인으로서 조선인과 결혼하여 처가 된 자(단 결혼해소에 의하여 외국에 복적한

3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105면, 112면.

31)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1221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최초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판시하였다.

자는 제외함) 및 외국인으로서 조선에 귀화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동 규정에서의 ‘조선인’은 대한제국 말기의 민적법을 모태로 하여 1923년 이후에 이 법을 대체한 조선호적령에 따른 조선호적 입적자를 뜻한다. 따라서 이 조선호적 입적자는 이 임시조례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받은 것이 되고, 이후에 제정된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지만 았았다면 그 자손들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승계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북한주민은 이 임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선인의 범위에 속하므로 북한주민에게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sup>32)</sup>

한편 남북한이 1991년에 UN에 동시에 가입한 것은 국가만이 UN의 가맹국이 될 수 있다는 UN헌장 제4조에 의해 대한민국이 북한을 UN 헌장이 의미하는 국가로 승인함을 뜻하는바,<sup>33)</sup>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만약 어느 국가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였다면 그 국가에 대하여 대한민국도 북한이 국가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존중하여 북한 주민은 북한의 국민에 속하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즉, 대한민국은 북한의 주권과 북한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간섭을 삼가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헌법과 국적법의 효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sup>34)</sup> 따라서 재중 탈북자는 북한의 국민에도 속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이를 국제사회에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로 재중 탈북자는 헌법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국민임과 동시에 북한의 국민이 되는 이중 국적을 가지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35)</sup>

## 2) 국제 사회에서 재중 탈북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주장의 한계

지난 1955년에 국제사법재판소는 노테봄 사건(Nottebohm Case)에서 “외견상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어떤 자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그 이중 국적자가 어느 국가와 ‘진정하고도 유효한 연관’ 즉, 이중 국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32) 박정원, 탈북자의 인권보장, 공법연구 제33집 제5호, 2005. 6, 11면; 이병훈, 한국인은 누구인가?,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 6, 160면, 162면;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1, 168면; 현재 2000.8.31. 선고, 97헌가12 결정;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1221 판결.

33)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6, 945면; 심경수, 영토조항의 통일지향적 의미와 가치, 헌법학연구 제7권 제2호, 2001. 8, 152면; 최대권, 한국헌법의 좌표-영토조항과 평화적 통일조항-, 법제연구 제2권 제1호, 1992. 6, 11면.

34) 나인균, 한국 헌법과 통일의 법적 문제, 헌법논총 제5집, 1994. 9, 474면; 박정원, 위의 논문, 118면; 심경수, 위의논문, 152면; 이병훈, 위의 논문, 163면; 제성호,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 쟁점, 중앙법학 제6집 제2호, 2004. 8, 83면.

35) 이희훈, 앞의 논문, 220면, 222면.

무관계, 어느 국가에 대해서 애착을 더 가지고 있는가의 사실, 충성심, 군복무를 한 지역, 거주기간, 이중 국적자가 각각의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이익과 감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sup>36)</sup>

이 판결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동시 수교국인 중국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인 재중 탈북자들이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때 중국은 이들에게 남북한의 국적 중 어느 것이 재중 탈북자와 진정하고도 유효한 연관을 가지는지를 판단하여 그 중 한 개의 국적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공산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북한을 법적 실체가 있는 완전한 독립 국가로 인정하여 왔으며,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훨씬 전에 북한과 수교를 맺어 왔으므로, 보통 중국은 재중 탈북자들을 북한 국민으로 인정하여 왔다. 이러한 사유로 중국이 재중 탈북자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재중 탈북자에 대해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중국에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국제 사회에서 이들의 인권 보호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sup>37)</sup>

### 3. 재중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적 인권 보호 방안과 한계

#### 1) 재중 탈북자에 대한 난민으로서의 지위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A(2)에 의하면 난민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2에 의하면 난민은 “이 의정서상 난민이란 용어는 본조 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A(2)에서

36)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Nottebohm Case (Liechtenstein v. Guatemala), Second Phase, Judgment of 6 April 1955, ICJ Report, 1955, p.23, pp.25~26.

37) 박정원, 앞의 논문, 118면; 이희훈, 앞의 논문, 223면 이하.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표현과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협약상의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인종·국적·종교·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는 ‘공포’를 가진 자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박해’란 보통 사람이 감수하기 힘든 고통을 초래하는 공격이나 압박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sup>38)</sup> 그리고 이들 규정에서 박해의 사유로 ‘정치적 의견 이외에 인종·종교·국적·특정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사유’는 여기서의 박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들 규정에서 ‘공포’는 주관적인 요소로 난민임을 주장하는 자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뜻하는 주관적인 느낌과 객관적인 요소로서, 이러한 주관적 느낌에 대해 일반인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sup>39)</sup>

이밖에 이들 규정에 의한 국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협약상의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적국의 밖에 있는 자’이거나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자’이어야 하는바, 여기에는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상주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의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사실상의 무국적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느 국가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의 상주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이 없어 본래부터 어느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법률상의 무국적자)가 여기에 해당한다.<sup>40)</sup>

생각건대,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한 이유가 설사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과 이에 대한 저항적 의사표시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재중 탈북자가 협약상의 난민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sup>41)</sup>

38) Paul Weis, The Concept of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UN Doc. HCR/INF/49, 1961. 3. 2, p.22.

39) Paul Weis, Ibid., p.21.

40) 김명기, 재외 북한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위법성, 북한 제339호, 2000, 3, 148면 이하; 김명기, 국제법상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도법 논총 제17집, 1997. 7, 24면 이하.

41) 김찬규, 북한탈북자의 난민자격과 그 처우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214호, 1994. 6, 11면 이하; Guy S. Goodwin-Gill, The Refuge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Clarendon Press,

그리고 중국은 보통 재중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해 왔고, 이렇게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 형법 제62조나 동법 제233조에 의해 사형 등의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sup>42)</sup> 협약상의 난민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재중 탈북자들은 이미 그들의 국적국 또는 상주국인 북한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중 탈북자는 협약상의 난민이 되기 위한 요건 중 ‘국적국 또는 상주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유로 재중 탈북자는 협약상의 난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43)</sup>

## 2) 국제 사회에서 재중 탈북자의 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한계

어떤 국가에 들어 온 개인이나 집단을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상의 난민 즉, 협약상의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개인이나 집단이 체류하고 있는 영토국의 재량에 속하는바,<sup>44)</sup>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에 의해 재중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은 이들을 협약상의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보통 재중 탈북자들을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 국경 지역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 제4조 제1항과 제2항 및 동 의정서 제5조 제1항과 제2항, 길림성변경관리조례, 민형사 사법협조 조약에 위반한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여 왔다. 따라서 중국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F(b)에서 “난민으로서 피난지국에의 입국이 허가되기 전에 피난지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사람은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동 협약 제33조 제2항에서 “난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안전에 위협으로 간주될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특별히 중대한 판결을 받아 그 국가 사회전반에 대한 위협이 되는 난민은 강제 송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재중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1983, p.32.

42) 이러한 처벌의 가혹성에 대해 자세한 것은 본 논문의 III-2번 참조.

43) 김찬규, 앞의 논문, 11쪽. 이희훈, 앞의 논문, 227면.

44)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6, 379면; 제성호,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와 유엔의 역할,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3호, 2003. 12, 215면; Atle Grahl-Madsen, Refugees,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msterdam, 1985, pp.256-257.

왔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에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에게 재중 탈북자를 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하지 말라고 국제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V.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sup>45)</sup> 중국의 승인 없이는 이중 국적자인 재중 탈북자들을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이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국제법적으로도 이들을 협약상의 난민으로 보아 난민으로서 이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보호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향후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UN 등과 함께 중국에게 중국 헌법 제32조 2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과 중국이 1982년 9월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체약국임을 상기시켜 중국이 재중 탈북자들을 북한의 국민으로 보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협약상의 난민으로 인정토록 촉구하며, 중국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제1항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통해 재중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아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UN 헌장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실현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UN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는 점<sup>46)</sup>도 상기시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여 여러 극심한 인권 침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촉구하고, 이들에게 중국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해 주고, 필요한 의료상의 혜택 및 제3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47)</sup>

그러나 중국이 모든 재중 탈북자들을 협약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해 주는 것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거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중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이들에 대한 인

45) 본 논문의 IV 중에서 2번과 3번 참조.

46) 이희훈, 앞의 논문, 227면.

47) 노명준, 난민의 국제법적 보호, 인권과 국제법, 석암배재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89, 52면 이하.

식 및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여 정치적·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바, 중국인과 결혼관계를 맺고 있는 재중 탈북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중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sup>48)</sup> 중국에게 적극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국제단체(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주도로 재중 탈북자의 인권 침해 현황 및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재중 탈북자의 처우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UN 인권기구를 적극 활용토록 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이러한 민간단체 사이에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재중 탈북자에 대한 민관협의를 제도화하고, UN 인권 이사회와 규약 위원회 및 주제별 특별보고관 등의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재중 탈북자에 대한 여러 인권 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토록 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재중 탈북자의 인권 침해 문제 협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재중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 대화를 하는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재중 탈북자의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도록 외교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캐나다·영국 등 재중 탈북자가 향후 정착하려는 여러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sup>49)</sup> 이밖에 대한민국 정부는 재중 탈북자들을 돕는 민간 국제단체(NGO)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할 것이다.

48) 이원웅, 해외 탈북자 인권보호 핵심은 합법적 체류 인정, 통일한국, 2008. 10, 14면.

49) 김수암, 앞의 논문, 12면 이하.

## 참 고 문 헌

### I. 국내 문헌

#### 1. 단행본

-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6.  
김병로,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5.  
김수암,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통일연구원, 2006. 6.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1.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미디어, 2000. 5.

#### 2. 논문

- 김명기, 국제법상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도법 논총 제17집, 1997. 7.  
김명기, 재외 북한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위법성, 북한 제339호, 2000, 3.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과 인권,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0. 10.  
김인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인권과 정의 제317호, 2003. 1.  
김찬규, 북한탈북자의 난민자격과 그 처우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214호, 1994. 6.  
나인균, 한국 헌법과 통일의 법적 문제, 헌법논총 제5집, 1994. 9.  
노명준, 난민의 국제법적 보호, 인권과 국제법, 석암배재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89.  
노영돈, 북한탈출주민의 법적 지위와 그 처리방안,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제7집, 1996. 12.  
박광득,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제3호, 2006. 2.  
박정원, 탈북자의 인권보장, 공법연구 제33집 제5호, 2005. 6.  
심경수, 영토조항의 통일지향적 의미와 가치, 헌법학연구 제7권 제2호, 2001. 8.  
원재천, 탈북자문제: 국제소송을 통한 해결책, 인권과 정의 제317호, 2003. 1.  
윤여상, 탈북자 인권실태와 개선 방안, 북한 제356호, 2001, 8.

- 이병훈, 한국인은 누구인가?,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 6.
- 이원웅, 해외 탈북자 인권보호 핵심은 합법적 체류 인정, 통일한국, 2008. 10.
- 이희훈, 중국 내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2006. 12.
- 임태근,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법학 제17호, 2000. 2.
- 제성호,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와 유엔의 역할,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3호, 2003. 12.
- 제성호,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 쟁점, 중앙법학 제6집 제2호, 2004. 8.
- 최대권, 한국헌법의 좌표-영토조항과 평화적 통일조항-, 법제연구 제2권 제1호, 1992. 6.

## II. 외국 문헌

- Atle Grahl-Madsen, Refugees,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msterdam, 1985.
- Guy S. Goodwin-Gill, The Refuge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83.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Nottebohm Case (Liechtenstein v. Guatemala), Second Phase, Judgment of 6 April 1955, ICJ Report, 1955.
- Office of UNHCR, Handbook on procedure and Criteria for determineing Refugee Status, Geneva, 1979.
- Paul Weis, The Concept of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UN Doc. HCR/INF/49, 1961. 3. 2.

## III.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中서 탈북자 35명 체포, 이달초 복송 예정’, 연합뉴스, 2011. 10. 2.자.
- ‘탈북자 23명 中서 복송 위기’, 연합뉴스, 2011. 11. 10.자.
- 경향신문, 올 상반기 탈북자 1만명 돌파할듯,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61231205617009 &p=khan>>(2011. 11. 25, 방문).
- 더데일리, 인권위 "在中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촉구, <<http://www.ithedaily.com/news/>

articleView.html?idxno=89864#>(2011. 11. 25, 방문).

데일리안, 여성탈북자들 조선족 개입한 인신매매 '심각',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68221&kind=menu\\_code&keys=3](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68221&kind=menu_code&keys=3)>(2011. 11. 25, 방문).

디지털 조선일보, 김정은 "강 건너면 용서 없다"...탈북자 사살 늘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9/201111090138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9/2011110901389.html)>(2011. 11. 25, 방문).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 북송된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2),

<[http://www.nkgulag.org/korea/s03\\_1.htm?mode=read&read\\_no=25](http://www.nkgulag.org/korea/s03_1.htm?mode=read&read_no=25)>(2011. 11. 25, 방문).

자유 아시아 방송, USCRI: 중국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 지난해만 5000명,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refugees\\_china\\_abused-20060615.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refugees_china_abused-20060615.html)>(2011. 11. 25, 방문).

크리스천투데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고문구타 심각,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9879>>(2011. 11. 25, 방문).

통일부 공식 블로그, 다큐멘터리 <서울기차>, 중국과 탈북자들,

<[http://v.daum.net/link/20265730?&CT=MY\\_ON](http://v.daum.net/link/20265730?&CT=MY_ON)>(2011. 11. 25, 방문).

한겨레 21, 대탈주. 목숨 건 구조자들,

<[975T0159\\_063.html](http://www.han겨레.com/975T0159_063.html)>(2011. 11. 25, 방문).

MBN 뉴스, 탈북자 2만 3천 명...취업 장벽 여전,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132454](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132454)>(2011. 12. 03, 방문).

VOA 뉴스, 중국, 탈북자 지원 기구 단속 강화 다짐,

<<http://www.voanews.com/korean/news/a-35-a-2003-01-21-5-1-91132404.html>>(2011.11. 25, 방문).

<국문초록>

## 재중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인권 보호 방안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재중 탈북자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의해 탈북자를 보통 북한의 주민으로 보아 왔다. 따라서 남한은 탈북자에게 보호권을 행사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어렵다.

한편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체류자로 보아 그들을 난민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여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향후 남한은 NGO와 UN 및 여러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이 더 이상 탈북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재중 탈북자, 인권 침해와 인권 보호 방안, 외교적 보호권, 난민, 강제송환금지 원칙

<Abstract>

## The Human Rights Abuse and The Protective Way of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Lee, Hie-Houn

Professor of Sunmoon University

It will be assumed that a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belongs to dual nationality that all has South Korea and North Korean nationality in the global community.

However, China considered a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with common North Korean inhabitants by a principle of effective nationality. Therefore, South Korea is hard to use the diplomatic protection right to a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Thus, South Korea is hard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Meanwhile, China considers a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with a person of illegal stay and does not protect them with refugees. And, China sends a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back home forcibly in North Korea and infringes these human rights.

Future, South Korea cooperates with NGO and UN and many countries closely, and China must not be able to infringe human rights of a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y more.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Human Rights Abuse and Protective Way of Human Rights, Diplomatic Protection Right, Refugee, Principle of Non-Refoulement